#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8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 김도읍・김석기・김예지

장동혁 · 신동욱 · 백종헌

인요한 • 이헌승 • 구자근

조지연 의원(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노인빈곤은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회의 차단 및 각종 차별을 초래함에 따라 빈곤노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노인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상 태에 놓여 있는 노인을 위하여 국가가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빈곤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빈곤노인이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정의함(안 제3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지원 등 빈곤노인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곤노인의 보건·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보건 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

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과 빈곤노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노인빈곤예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법률 제 호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노인이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빈곤노인이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생활과 건강하 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2. "노인빈곤"이란 노인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보건적·복지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 3. "빈곤노인"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경제· 보건·복지·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노 인을 말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노인정책의 수행에 필 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노인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빈곤노인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노인이 사회·경제·보건·복지· 문화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사회·경제·보건· 복지·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 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 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노인의 사회·경제·보건 ·복지·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빈곤노인의 보건 · 복지 · 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2. 빈곤노인의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 3. 빈곤노인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빈곤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빈곤노인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빈곤노인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노인정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 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 2.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차관
  - 3. 빈곤노인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과 빈곤노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빈곤노인 상담 및 지원사업에의 연계. 정보 제공
- 3.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 4. 그 밖에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이하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빈곤예방전담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 다.
  - ③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빈곤예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 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 치단체 및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정보시스템은 「노후준비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